##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98 발의연월일: 2020. 9. 22.

발 의 자:정필모·오영환·이성만

윤재갑 • 한준호 • 김승원

박홍근 • 아수진비 • 기동민

김상희 • 이원택 • 전혜숙

황운하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9년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제어봉의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%를 초과하여 18%까지 올라가는 이상 상황이 발생하자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바 있음.

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동 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, 당시 무자격자가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의 지시·감독도 없이 원자로를 일부 조종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음.

이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의지시·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가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때문에,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

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함으로써,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84조제1항 단서). 법률 제 호

##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제1항 단서 중 "제2항 각 호(제2호는 제외한다)의"를 "제2항제3 호부터 제7호까지의"로, "이를 운전하거나"를 "핵연료물질·방사성동 위원소등을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제84조(면허 등) ① 원자로의 운    | 제84조(면허 등) ①    |
| 전이나 핵연료물질・방사성동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위원소등의 취급은 대통령령으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면허를 받은 사람이나 「국가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기술자격법」에 따른 방사선관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리기술사가 아니면 이를 할 수       | <u>.</u>        |
| 없다. 다만, 제106조제1항에 따    |                 |
| 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       | 제2항제3           |
| 이 제2항 각 호(제2호는 제외      | 호부터 제7호까지의      |
| 한다)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방사선관리기술사의 지시・감         | <u>핵</u> 연료물질·방 |
| 독하에 <u>이를 운전하거나</u> 취급 | 사성동위원소등을        |
|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하다.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
| ② (생 략)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|